

##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 파견비용 사용범위 확대,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물 회수금액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등
-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제65조, 제1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식 신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서식 수정, 서식 번호 변경 등
-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안 제21조, 제80조, 제113조)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정산 시 직접비 사용 잔액의 범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자격요건 등의 의미 명확화
-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46조)
-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 적립기간 제한 완화,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 등
- 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안 제116조)
- 자. 서식 신설 및 수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로 한다.

제11조의2 중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을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따라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을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를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로,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를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

보다 높아서”로 한다.

제25조제4항 본문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를 “회의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제2호 중 “자체규정”을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참여연구자별”을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참여연구자에게만”을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학생연구자는”을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6항 중 “제4항제1호”를 “제4항”으로,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를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제8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제8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연장을”을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지급받은”을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를 “해당 학생인건비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를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체 또는 계정대체”를 “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을 “이체된”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학생연구자”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연구자”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균등하게”를 “제40조제4항에 따

라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연구개발기관 계정을 신설하여야”를 “제8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있어”를 “있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책임자의”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로, “변경되거나”를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을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로,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를 “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연구개

발기관계정”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구책임자계정”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한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수정직접비”를 “연차별 수정직접비”로, “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 전단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을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은 날 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으로,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를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 중 “개선계획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기간”을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7호”를 “별지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19호”로, “별지 제19호”를 “별지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을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로 한다.

제116조제3항 중 “제72조까지”를 “제74조까지”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과 별도로 사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호(\*) 중 “\*”를 “\*\*”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를 “\*\*\*”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를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

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 ~ 20 . .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 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 20 .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담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부 칙

##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 20 . . . .	(년 월)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인정 사항	인정 신청 사유	상세 내역	금액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단계 내 직접비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비용의 계상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단계 내 수정직접비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그 밖에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			

- \* 협약 체결 이후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 및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 '인정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행의 추가·삭제 가능
- \*\*\* '인정 신청 사유'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개발 내용과 연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사유에 대해 기재
- \*\*\*\* '상세 내역'에는 인정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세 소요 내역을 기재 (수량 × 단가 등)
-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인)  
 연구개발기관: ○ ○ ○ 장 ○ ○ ○ (직인)

000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7조제5항은 2024. 9. 1부터 시행하며, 제9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체'는 2024. 8. 31.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 11. (생략)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 ----- ----- ----- ----- ----- ----- ----- ----- ----- ----- 5.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 -----

용용도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①·② (생략) <신설>	----- -----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 -----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② (생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 ----- ----- ----- -----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 ----- 경우에 적용

④ (생략)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되는 금액보다 높아서---.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의비 -----  
 -----  
 -----  
 ---.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1. (생략)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⑦ ~ ⑩ (생략)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 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생략)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계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  
 -----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  
 -----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  
 -----.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  
 -----  
 -----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

③ ~ ⑧ (생 략)

<신 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생 략)

③ (생 략)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⑤ (생 략)

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려는 경우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4항 ----- 구분하여 -----

⑦ ~ ⑨ (생략)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략)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 사용 잔액으로 본다.  
 ⑤ ~ ⑩ (생략)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항 및 제2항-----  
 -----  
 -----  
 -----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① -----  
 -----  
 -----  
 -----  
 -----  
 -----  
 -----  
 -----  
 -----

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생략)  
 ②·③ (생략)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생략)  
<신 설>

-----  
 -----  
 -----  
 -----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frac{\text{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times (\text{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제8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div \text{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text{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제8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div \text{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 ④ (생략)

<신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③ -----  
-----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 -----.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  
-----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 해당 학생인건비를 -----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  
-. <후단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생략)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생략)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

② -----  
-----  
----- 이체 -----  
-----.

③ -----  
----- 이체된 -----  
-----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  
-----  
-----  
-----  
-----  
-----  
-----  
-----  
-----

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마다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

③ -----  
----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 -----

-----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⑤ -----  
-----

-----  
-----

-----  
-----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의 합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 ~ 6. (생략)

<신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가 1회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연도에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신설

-----  
-----  
-----  
-----  
-----  
-----  
-----  
-----  
-----  
----- 50퍼센트 -----  
-----

3. ~ 6.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  
-----  
-----  
-----  
-----  
----- 제87조제3항에 따라 연구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생략)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  
-----  
-----  
----- 있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  
----- 이체 -----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  
-----  
-----  
-----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생략)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차별 수정직접비 ----- 한다.

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턴 30일 이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 통합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 <후단 삭제>

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생략)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  
-----  
-----  
-----  
-----.

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남은 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

-----  
-----  
-----  
-----.

1. -----  
-----  
-----  
-----  
-----  
-----  
연구개발기간 -----  
-----  
-----.
2. -----  
-----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  
-----

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  
-----  
-----.

1. 별지 제18호 -----  
-----

2. -----  
-----  
-----  
-----  
----- 별지 제19

호 -----  
-----  
별지 제20호 -----  
-----  
-----

② -----  
----- 날이 포함된 연  
도에 실시하는 -----  
-----  
----- 날이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② 삭제  
③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③ ----- 제74조까지 -----  
-----  
-----  
-----  
-----  
-----.